긴급입찰 사유서

☐ 사 업 명 : 2027년 의왕시 스마트도시 솔루션 통합유지보수

☐ 사 업 비 : 금120,000,000원

☐ 요청사유

가. 법적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1.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사유: 의왕시 스마트도시 솔루션 통합유지보수 용역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도입 장비에 대한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긴급하게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 : 의왕시청 (인)

인천지방조달청장 귀하